

2022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

#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

서울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어린이집, 보육교직원 등 보육 관련 유공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표창하고자 함

## I 관련근거 및 개요

### 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 제3호
  - 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 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
- 2022년 「시민」 표창 운영계획(자치행정과-3100, 2022. 2. 14.)

### □ 표창개요

- 표창훈격 : 서울특별시장
- 표창대상 : 어린이집 시설장 및 우수 보육교직원 등 보육사업 유공자
- 표창인원 : 230명(표창장 200, 상장 30)

구 분	합계	표창장										상장
		서울시	자치구	서울시연합회	국공립연합회	민간연합회	가정연합회	직장·법인·단체	육아종합지원센터	여성가족재단	서울상상나라	
2022년	230	14	90	5	19	19	18	6	27	1	1	30

- 서울시 추천(14명) : 방문간호사 2, 장애아전담 2, 영아전담 2, 시간제 1, 야간연장 2, 서울형 2, 서울시 시책사업 1, 모아어린이집 2
- 자치구 추천(90명) : 자치구별 보육종사자 인원수 기준 배정·추천 ※ 배정현황 붙임 참조
- 어린이집 연합회 추천(67명) : 서울시연합회 5, 국공립 19, 민간 19, 가정 18, 직장·법인·단체 6
-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천(27명)
  - 시 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 중인 자(추천일기준)
  - ※ 분야 :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운영요원 보육반장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
- 서울시여성가족재단(1명) 및 서울상상나라(1명)

## II

## 표창 세부계획

### 추천대상

-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- 어린이집 장기 근무자로서 영유아 보육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
-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·노력한 자

### 대상자별 추천기준

#### ○ 어린이집 시설장(원장)

- ① 맞춤형 보육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
  - 야간연장, 24시간, 시간제, 365일, 장애아 통합, 다문화 통합, 방과후, 영아전담 등
- ② 평가인증 점수 및 등급이 90점 이상 또는 A등급인 어린이집의 장
- ③ 영유아보육법 제49조2의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
- ④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의 장
- ⑤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어린이집의 장

- 보육교사 :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성실히 근무 중인 자(추천일 기준)
- 기관 단체 직원 : 2년이상 계속하여 성실히 근무 중인 자(추천일 기준)

###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

#### ○ 추천기한 : 2022. 8.26.(금)까지

#### ○ 추천방법

- 자치구 : 자체 공적심사 후 추천
- 市 육아종합지원센터, 어린이집연합회, 서울시여성가족재단, 서울상상나라 : 공적내용, 추천기준 확인 후 추천(1.5배수 추천 후 심사)
  - ※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(협회)로부터 후보자 추천 시 수여규모의 1.5배수 이상 추천(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)
- 공모전 :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수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

## ○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
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(<http://www.moel.go.kr/info/publicct/publicctList.do>)
  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확인
  - 정보공개 > 사전정보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“산업재해” 검색
- 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(<http://www.ftc.go.kr/www/violationLawList.do?key=298>)
  -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 조회)를 통해 확인
- ③ 근로기준법 위반(<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ter/list.do>)
  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)를 통해 확인
- ④ 세금체납 조회
  -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
    - 국세청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정보공개-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
    - 관세청([www.customs.go.kr](http://www.customs.go.kr)) 정보공개-사전정보공표-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
    - 서울시([www.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) 분야별정보-행정-새소식-체납자 명단공개
  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

## ○ 제출서류

- 공적조서, 개인별 공적요약서,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, 서울시 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, 홈페이지 등록동의서, 공적심의의결서

⇒ 공적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위주로 작성

(공적기간 동안의 공적을 시기·횟수 등 활동사실을 자세히 기재)

## □ 추천 제한대상 ※ 붙임4.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참조

### ○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(표창금지)

-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

### ○ 체납기간·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

### ○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, 무기, 1년 이상 징역·금고의 형을 받은 자

- ※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, 미신고 시 취소 가능

## ○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## ○ 일반적인 추천을 제외하는 자

-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(사회적 이슈,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)
- 최근 2년 이내(추천일 기준)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  - ※ 단, 제안제도·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
-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('18년~'22년 현재)
  - ※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받은 어린이집은 자치구 판단하에 추천 가능
-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
- 공적과 무관하게 선심성, 순서, 단체나 협회 등 조직 기여자 위주 선정 배제

### 《공직선거법 검토》

- **부상품 지급1 가능여부: 미지급**[공직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제2항 제4호 가목]
  - 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.

## □ 추진일정

- 표창대상자 추천 요청 : '22. 7.25.
  - 서울시(보육담당관) → 자치구, 어린이집연합회 등
- 표창대상자 추천 : '22. 8.26.
  - 자치구, 어린이집연합회 등 → 서울시(보육담당관)
-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: '22. 9월
- 市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 : '22. 9월
- 市 공적심의회 심의(자치행정과) : '22. 9월
- 표창 및 상장 수여(추후 확정) : '22.10월